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비상대비훈련 의무 규정 신설〉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987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비상대비훈련 의무 규정 신설 ·	2
IV. 입법의 재정영향	11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5.

3. 회 부 일 : 2026.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한 비상대비훈련 의무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충돈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5(비상대비훈련) ①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충돈수가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 ----- -----

1. ~ 7. (생략) <u><신설></u> ②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퇴 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 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	--

나. 검토의견

1)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비상대비훈련 의무 규정 신설(안 제28조의5)

-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은 원양어선의 건조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려는 국제협약으로, 24미터 이상 공해 운항 원양어선¹⁾에 대해 어선 복원성, 선체 구조와 소방·구명설비 기준 강화, 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1) 케이프타운 협정 부속서(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규칙) 제1장(총칙) 제1규칙(적용)은 길이 24m는 국제총톤수 300톤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조항」 제3조는 적용대상을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획물 가공 선박을 포함하여 공해를 항해하는 어선에 적용하도록 하고, 스포츠 또는 레저, 어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자원의 가공, 연구 및 실습, 또는 어획물 운반선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케이프타운 협정 개요 >

□ 개요

- (공식 명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 (채택일/장소) 2012년 10월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발효 요건) 2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가입하고, 각국의 24m 이상 국제항해 어선의 총 합계가 3,600척 이상인 경우(1년 뒤 발효)
⇒ '26.2.24 아르헨티나 가입으로 요건 충족(28개국, 3,754척) ⇨ '27.2.24 발효

□ 협정 주요내용

- (구성) 적용 대상, 발효기준 등 명시한 총칙과 구조·설비, 구명설비, 무선통신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부속서로 구성
- (주요 내용) 어선 복원성, 선체 구조와 소방·구명설비 기준 강화, 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 기준 마련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케이프타운 협정은 길이 24m(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신조선 또는 현존선에 대한 비상배치표의 게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의 정기적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선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에서의 비상대비훈련에 대해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비상배치표 선내 비치 및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²⁾하고 있어

2)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협약 발효 시 국내 법률에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선박의 범위가 다른 문제가 발생함.

즉, 국제총톤수 300톤³⁾ 이상 총톤수 500톤⁴⁾ 미만 규모의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의무가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국내법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제처는 케이프타운 협정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에 대해 협정 가입안과 국내 법률에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선박의 범위가 달라 케이프타운 협정은 국내 법률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참고자료 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⁵⁾는 강화된 안전 기준 등 협정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浮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3) 개정안 및 케이프타운협정에 따른 비상훈련 톤수 기준, 국제총톤수 300톤은 (국내)총톤수 189톤 수준임
 - 4) 「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 톤수 기준, (국내)총톤수 500톤은 국제총톤수 793톤 수준임
 -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검토보고서(2025.11.14. 상정), p.12.

< 협정과 관계법령 현황 >

케이프타운 협정	관 계 법 령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폴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부속서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규칙 제1장 총칙 제1규칙 적용 1. (생 략)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주관청은 모든 장의 측정기준으로 길이(L) 대신에 다음의 총톤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가. <u>총톤수 300톤은 길이(L) 24m와 동 등한 것으로 본다.</u> 나. ~ 라. (생 략) 3. ~ 6. (생 략)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제1규칙 적용 <u>이 장의 규칙은 길이 24m 이상의 신선</u>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 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 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u>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u> 다만, 평 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 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 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 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 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 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주요내용	동 협정 관련
원양산업 발전법	• 선원훈련 규정 신설 * 現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양어선안 전지침 근거로 주기적 선원훈련 수행 중 * 現 「선원법」에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대해 서 선원 훈련 규정 있음.	• 부속서 제8장(비상 절차, 소집 및 훈련) - 24m(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 선원이 매 월 1회 이상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받는 근거 마련

및 현존선에 적용된다.

**제3규칙
퇴선훈련 및 연습**

1. 비상소집훈련의 실시

가. 각 선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한다. 다만, 주관청은 길이 45m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적어도 3개월마다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 차. (생략)

2. ~ 4. (생략)

□ 다만,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협정 및 현행 선원법과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협정 부속서 제8장은 비상배치표의 게시와 비상훈련을 일체로 규정6)하고 있고, 「선원법」 제15조7) 역시 비상배치표 게시의무와 비

**6) 케이프타운 협정 부속서(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규칙) 제8장(비상 절차, 소집 및 훈련)
제2규칙(일반비상경보장치, 비상배치표 및 비상지침서)**

2. 모든 선박에는 비상시 각 선원들이 따라야 하는 명확한 지침서를 비치한다.

3. 비상배치표는 선박의 여러 부분, 특히 조타실, 기관실 및 선원거주구역에 게시하며 다음 각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4. 비상배치표에는 제1항에서 규정된 일반경보신호의 상세와 함께 이러한 경보신호가 울릴 때 선원이 취하여야 할 행동을 명시한다. 또한 비상배치표에는 어떻게 퇴선명령이 내려지는지를 명시한다.(이하 생략)

5. 비상배치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선원 각자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나열한다.

가. 선박의 수밀문, 방화문, 밸브, 배수구, 선외배출구, 현창, 천창, 원형창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구의 폐쇄

나. 생존정 및 그 밖의 구명설비의 구비, 다. 생존정의 준비 및 진수, 라. 그 밖의 구명설비의 일반적인 준비, 마. 통신장비의 사용, 그리고, 바. 화재진압을 위한 지정된 소방대의 배치

제3규칙(퇴선 실습 및 훈련)

1. 비상소집 및 훈련

가. 각 선원은 매월 적어도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한다. 다만, (생략)

나. 각 퇴선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일반비상경보에 의한 비상소집장소로의 선원소집 및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퇴선명령에 대한 선원의 인식 보장

상대비훈련 의무를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비상대비훈련만을 규정하고 비상배치표 게시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

협정 부속서 제8장이 비상배치표를 비상훈련과 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선원법」 제15조가 비상배치표 게시의무와 훈련의무를 함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협약상의 의무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및 협정의 충실한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을 고려할 때, 비상배치표 게시의무를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선원법」 제15조제1항은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훈련에 대하여 법률 간 용어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용어는 협정상 ‘abandon ship drill and fire drill’의 번역어에 가까우나,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선원법」 등 관련 법령과의 용어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비상배치표에 기술된 임무를 비상집합소에 보고 및 준비

3) 선원의 복장 적합성 점검 (이하 생략)

7)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 8) 한국선급은 「선원법」 제15조의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비상배치표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2) 비상대비훈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안 제36조제1항)

□ 퇴선훈련 또는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안 제36조제1항제8호와 관련하여, 비상대비훈련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은 ①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1호⁹⁾ (비상대비훈련 미실시 선장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②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¹⁰⁾ 각 호(안전관리지침 미비치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사 위반행위와 비교해 볼 때 과태료 기준의 형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총톤수 5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경우 「선원법」 제15조와 개정안 제28조의5가 중복하여 적용되어, 동일·유사한 훈련의무(소방·퇴선 훈련 등)와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

9) 「선원법」

제17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10)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삭제 <2015. 1. 6.>
5. 삭제 <2015. 1. 6.>
6.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으므로 중복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총톤수 300톤¹¹⁾ 이상 총톤수 500톤¹²⁾ 미만 규모의 원양어선에 대한 비상대비훈련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인바, 협정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규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에서 적용 대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을 두거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시행일(안 부칙)

- ☐ 안 부칙은 협정 발효일인 2027년 2월 24일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약 이행입법의 시행일을 그 조약의 효력발생일에 맞추는 표준적 입법방식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¹³⁾.
-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에 대해 케이프타운협정 제8장에 따른 정기 퇴선훈련과 소화훈련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11) 개정안 및 케이프타운협정에 따른 비상훈련 톤수 기준, 국제총톤수 300톤은 (국내)총톤수 189톤 수준임

12) 「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 톤수 기준, (국내)총톤수 500톤은 국제총톤수 793톤 수준임

13) 조약 이행입법에 관하여 “그 시행일이 조약 효력발생일보다 늦지 않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의 지연 등으로 공포일이 2027년 2월 24일 이후가 될 경우 시행일이 공포일보다 앞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공포일이 2027년 2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같은 단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⁴⁾

문 의 처

02)6788-5419

1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케이프타운 협정 개요

□ 개요

- (공식 명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 물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 (채택일/장소) 2012년 10월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발효 요건) 2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가입하고, 각국의 24m 이상 국제항해 어선의 총 합계가 3,600척 이상인 경우(1년 뒤 발효)
⇒ '26.2.24 아르헨티나 가입으로 요건 충족(28개국, 3,754척) → '27.2.24 발효

□ 협정 주요내용

- (구성) 적용 대상, 발효기준 등 명시한 총칙과 구조·설비, 구명설비, 무선통신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부속서로 구성
- (주요 내용) 어선 복원성, 선체 구조와 소방·구명설비 기준 강화, 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 기준 마련 등

□ 비준 현황: 28개국('26.2.24 기준)

구 분	계	비준국
합계	28	
유럽	11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6	콩고 민주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케냐, 가나
아메리카	5	벨리즈, 니카라과, 세인트키츠 네비스, 페루, 아르헨티나('26.2.24)
오세아니아	4	쿡제도, 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아시아	2	일본, 대한민국('25.12.23)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안]**

1. 주요 내용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원양어선의 구조, 선내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원양어선과 선원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사안전 전반 및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 이 협정 가입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해당 여부

- 이 협정 가입안 부속서 제1장 제1규칙제2항가호에서 주관청은 모든 장의 측정 기준으로 길이(L) 대신에 총톤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총톤수 300톤은 길이(L) 24m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협정 가입안 부속서 제8장제1규칙에서 이 장의 규칙은 길이 24m 이상의 신선(新船) 또는 현존선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3규칙제1항가호에서 각 선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국내법인 「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함)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협정 가입안과 국내 법률에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선박의 범위가 달라 이 협정 가입안 부속서 제8장 제3규칙은 국내 법률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협 정 가 입 안	관 계 법 령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안 부속서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규칙 제1장 총칙 제1규칙 적용 1. (생 략)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주관청은 모든 장의 측정기준으로 길이(L) 대신에 다음의 총톤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가. <u>총톤수 300톤은 길이(L) 24m와 동 등한 것으로 본다.</u> 나. ~ 라. (생 략) 3. ~ 6. (생 략) 제8장 비상조치, 소집 및 훈련 제1규칙 적용	「선원법」 제 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 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 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u>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u>. 다만, 평 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 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 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 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 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 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장의 규칙은 길이 24m 이상의 신선 및 현존선에 적용된다.

제3규칙
퇴선훈련 및 연습

1. 비상소집훈련의 실시

가. 각 선원은 적어도 매월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에 참가한다. 다만, 주관청은 길이 45m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적어도 3개월마다 1회의 퇴선훈련 및 1회의 소화훈련을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 차. (생략)

2. ~ 4. (생략)

○ 따라서, 이 협정 가입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 가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

제3조(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 원양어선 조업 현장의 안전과 선원들의 근무 안전성 확보에 기여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식 명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국제해사기구(IMO)

** (발효 요건) 공해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척수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실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360)
		담당자	사무관	황혜진 (051-773-5368)